

연구윤리  
교육교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

#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 -

#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 ▶ 본 교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연구윤리 교육교재입니다.
- ▶ 본 교재의 제1장과 제4장은  
본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기준 및 사례집”(2013.7.)의 내용을  
요약 또는 전재한 것입니다.

# NRCS

## | Contents |

### I. 연구윤리 개요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1. 연구윤리란?	6
2.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윤리	6
3. 연구윤리 평가 및 교육의 필요성	7

### 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1. 연구윤리 평가규정	10
2. 올바른 출처·인용 표시 방법 등	10
3. 연구윤리 위반유형 1 : 연구부정행위	12
4. 연구윤리 위반유형 2 : 연구부적절행위	14
5.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신규대비	15

### I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의심사례 및 시사점

1.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유형	18
2.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의심사례 및 시사점	21
1) 변조 의심사례	21
2) 표절 의심사례	22
3) 부당한 저자표시 의심사례	57
4) 중복게재 의심사례	58
5) 기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의심사례	70

### IV. Q&A

### V.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 I. 연구윤리 개요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1. 연구윤리란?
2.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윤리
3. 연구윤리 평가 및 교육의 필요성



# I. 연구윤리 개요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 1. 연구윤리란?

-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말함.
  - 연구윤리는 좁은 의미로 연구자가 연구를 신청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지켜야 할 행동양식임.
- 연구윤리의 출발점\*은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및 객관성으로 요약됨.
  - (\* 미국 연구윤리국(ORI, 『연구윤리의 소개』)
  - (정직성)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 (정확성)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오차를 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 (효율성)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
  - (객관성)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부당한 편견을 피하는 것

## 2.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윤리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국책연구기관’ 이라는 명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Think tank로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임.
  - 훌륭한 국가 정책 대안은 바로 연구자들의 정직하고 창의적이며 적실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제시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연구기관이 제출한 제 연구보고서의 평가는 진실성, 독창성을 전제로 함.
- 그러나 과거 시급성, 독창성만이 강조되어 연구 수행 과정이나 결과 발표에서 꼭 지켜야 할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등의 연구윤리가 등한시 된 바 있음.
  -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조작이나 표절 등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독창적이고 최초의 연구 성과로 알려진 것들의 가치를 순식간에 허물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함.

- 또한 연구윤리가 정책 입안에 대한 지원 기능을 증시하는 일종의 목적지향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결과물에 적용되기 곤란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결과물에도 연구윤리가 적용됨으로써 소통의 활성화로 인해 연구와 적용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옴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음.
  - 최근 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국가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작성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의 세금에 의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함.

## 3. 연구윤리 평가 및 교육의 필요성

- 정부의 고급 두뇌로서 국가의 정책 현안이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모든 연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연구자 자신과 그가 속한 연구기관은 물론 국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연구윤리의 준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함.
  - 연구윤리가 결여된 연구는 그 신뢰성이 훼손되어 해당 분야의 학문발전을 저해하며, 국가위신의 추락,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자 간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연구자의 스트레스 심화, 연구자의 업적을 지나치게 양적 실적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시스템, 급성장한 연구 역량에 부합하지 못하는 연구윤리의 불감증 등은 연구자로 하여금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의 2007년 권고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연구의 진실성이 확보된다. 진실성이 결여된 연구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연구자는 누구 보다도 스스로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문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과 장래까지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연구윤리 평가사업의 목적은 소관 연구기관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점검을 통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다양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유형을 파악하여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연구윤리 준수를 체화시키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평가”라는 연구윤리 검증 기제를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정책연구를 유도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음.
- 연구윤리 평가는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제재 등 사후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연구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를 통하여 창조적인 국가정책대안을 생산·유도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기준 및 사례집 등은 현재 안전행정부 등 정책연구 관련 정부부처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 내 거점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Ⅱ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1. 연구윤리 평가규정
2. 올바른 출처·인용 표시 방법
3. 연구윤리 위반유형 1 : 연구부정행위
4. 연구윤리 위반유형 2 : 연구부적절행위
5.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신규대비

## 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 1. 연구윤리 평가규정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를 말하며, 각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란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계재를 말함.
  - ‘중복계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계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계재)하는 ‘이중계재’를 포함함.

### 2. 올바른 출처·인용 표시 방법 등

- 출처표시의 방법
  -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는 문장 단위로 함.
  - 출처 표시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출처 표시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함.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켜야 함.

#### ● 인용 방법

-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함.
-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힘.
- 말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를 표시함.
-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함.

#### ● 출처표시의 대상

-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등
  - 전자 자료: 데이터 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경제적 지표 등
  - 이미지: 차트, 그래프, 표, 설계 도면, 사진 등
  -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 ※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비공개 내부자료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연구보고서 작성 등

-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함.
  -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함.
  -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 표시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함.

### 3. 연구윤리 위반 유형 1 : 연구부정행위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로 다음의 경우 위조로 판단
  -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 다음의 경우 변조로 판단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자료들의 상이함을 수정하는 경우
  -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 3)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경우 표절로 판단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국책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표절 판단 완화 기준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② 선행 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또는 그림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다음의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단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단,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 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본 보고서의 일부 장, 절을 타인이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시킬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및 감독을 해야 하며,
- ≫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본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히든 명확히 해야 함. 만약 본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먼저 출판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4. 연구윤리 위반 유형 2 : 연구부적절행위(중복게재)

- ①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경우
-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분만 출처를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시하지 않거나 출처 표시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 ③ 출처를 표시했다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도가 없는 경우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중복게재 판단 완화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①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 ②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 ③ 출판되지 않은 연구의 초고, 이슈 페이지,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 ④ 연차보고서나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심화 및 확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를 소개한 부분이나 연구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⑤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5.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신규대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신규대비표

구분	2012년도 연구윤리 평가기준	연구윤리 평가규정	비고 (개선 사유 등)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개념은 거의 동일하나 세부 판단 유형을 추가
변조	- 연구자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연구 자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참조 1
표절	①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미표기 ② 타인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표기 ③ 2차 문헌 표절 ④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혔지만, 직접인용하였으면서도 인용부호(" ")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⑤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⑥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⑦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①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④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⑤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유형은 연구윤리 평가 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  **참조 2
중복게재	①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 ② 출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복게재 ③ 출처표시를 한 중복게재	①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③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유형은 연구윤리 평가 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  *** 참조 3
부당한 저자표시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으나 내용은 동일

## Ⅲ.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의심사례 및 시사점

### 1.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유형

### 2.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의심사례 및 시사점

#### 1) 변조 의심사례

#### 2) 표절 의심사례

#### 3) 부당한 저자표시 의심사례

#### 4) 중복게재 의심사례

#### 5) 기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의심사례

### \* 참조 1

#### <위조의 유형>

1.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2.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3.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 <변조의 유형>

1.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자료들의 상이함을 수정하는 경우
2.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3.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 \*\* 참조 2

####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1.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선행 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또는 그림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

### \*\*\* 참조 3

####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1.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3. 출판되지 않은 연구의 초고, 이슈 페이퍼,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4. 연차 보고서나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심화 및 확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를 소개한 부분이나 연구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5.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 Ⅲ.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의심사례 및 시사점

### 1.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유형

#### 1) 표절

##### ①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유형 1-1

- 일반적 지식<sup>1)</sup>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활용
  - 교과서,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 ☞ 유형 1-2

-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paraphrasing)<sup>2)</sup>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유형 1-3

-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은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일반적 지식이란 쉽게 말하면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해당 전공)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교과서에 실리는 수준)을 말한다.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또는 '만유인력은 뉴턴이 발견했다'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When in doubt, cite the source).

2) 저자가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석)한 것을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장으로 말바꿔쓰기를 할 때는 원문의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어나 리듬을 피해야 한다.

##### ② 재인용 출처를 누락한 경우

##### ☞ 유형: 2차 문헌 표절

-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표시한 경우

##### ③ 인용된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 유형: 양적·질적 주종관계

-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표시했지만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아이디어나 어구 및 문장을 가져온 경우
  - 즉,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것이 주가 되고 자신의 것이 종적인 것에 해당되는 경우

##### ④ 출처를 부분적·한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 ☞ 유형: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 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⑤ 출처를 포괄적·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

##### ☞ 유형: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

-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각각의 부분에 대한 출처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 또는 절 제목 부분에만 특정 저작물을 인용 또는 참조했다고 표기하는 경우

## 2) 부당한 저자 표시

### 📌 유형 1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sup>3)</sup>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 3) 중복게재

### 📌 유형 1

-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중복게재(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이후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경우)

### 📌 유형 2

- 출처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복게재(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유형 3

- 출처표시한 중복게재(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3)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제공, 실험 및 조사를 통한 자료의 생성과 분석, 연구 내용에 대한 초안 작성, 연구결과의 승인 등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4) 2012년도 연구윤리 위반 사례 중에 변조/위조는 없었으나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의 고의적 변조에 대한 가상적 사례를 제시하였음.

## 2.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주요 위반 의심사례 및 시사점

### 1) 변조 의심사례<sup>4)</sup>

〈분석 목적〉 변수 X와 Y 간에 양(+)의 선형관계가 존재함을 입증

〈분석 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Y	170	165	174	180	166	163	172	177	158	176	168
X	174	173	175	179	172	-170	177	-183	167	180	175

- 두 자료는 가상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실제로 맞는(correct) 자료라고 가정

〈회귀분석 결과〉

$$Y = 169.8889 + 0.0001 X$$

(62.18)    (0.01)

〈해석〉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으로서 X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분석자료의 변조〉

	1	2	3	4	5	6	7	8	9	10	11
Y	170	165	174	180	166	163	172	177	158	176	168
X'	174	173	175	179	172	170	177	183	167	180	175

- 원래의 관찰치 6과 8의 X의 값을 고의로 부호를 바꾸어서 X'로 만들

〈회귀분석 결과〉

$$Y = -63.6994 + 1.3349 X'$$

(-1.97)    (7.23)

〈결론〉 변조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초의 목적대로 변수 X와 Y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선형관계를 갖는 결과 도출



### 해석 및 시사점

연구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돋보이게 하거나 가설검증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없는 데이터를 있는 것처럼, 있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변경, 삭제, 왜곡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 연구자의 정직성을 훼손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해침. 특히 설문조사, 인터뷰(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해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연구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객관성을 담보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함.

## 2) 표절 의심사례

### ①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심사례

####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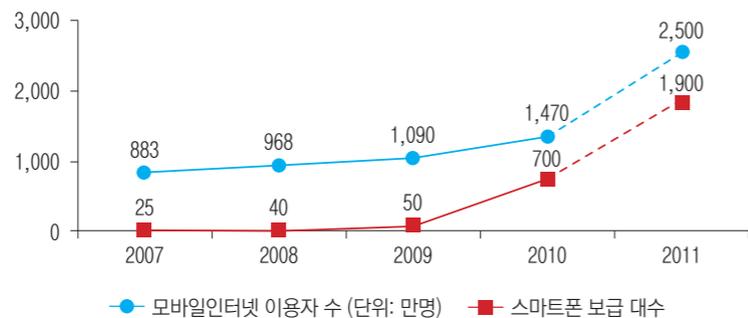
연구윤리 위반 유형	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그림과 내용을 가져와 본문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음
예시	

#### 표절 의심 부분: p.xx

스마트 정보통신기기의 보급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09년 11월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연간 1,300% 증가)에 동반하여 모바일 인터넷 활용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략 -

[그림 2-2]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수 변화추이



####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20××), “……”,

1.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증 - 1,470만명 (2010년 11월 현재), 2010년 증가율 35%

- 중략 -

이러한 최근의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는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출시와 함께 시작된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2010년 들어 급격한 증가(연간 1,300% 증가)가 만들어낸 결과이고, 스마트폰과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수는 향후에도 급격한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인터넷이 산업 연관효과도 크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향후 몇 년 간의 사회 변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해석 및 시사점

연구자 자신의 보고서에서 타인의 저작물이나 연구기관, 정부의 간행물 속에 있는 그림이나 도표 등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함.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활용하는 그림이나 도표 등이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원저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밝혀줌으로써 그 그림이나 도표 등에 들어간 원저자의 노력을 존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것이 아님을 표시해 주어야 함.

## 사례 2

**연구윤리 위반 유형** 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 ○○○외(20××)의 저작물의 일부내용을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예시**

**표절 의심 부분: p.XXX**

[표 5-12] HIAs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HIAs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주자 파악	- 지방정부와 함께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조사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주자를 파악함(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임) -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거주자뿐만 아니라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함
노후불량주택 유지보수와 관련한 상담지원	- 노후불량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합한 보수방안 및 법적 기준 등에 대해서 상담해줌
노후불량주택 보수 자금조달과 관련한 상담지원	- 노약자들에게 주택개보수와 관련한 자금조달 문제를 상담해주고, 이들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조언해줌
노후불량주택 보수에 필요한 기술지원	- 노약자들의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파악한 후, 주택보수가 요구되는 부분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상담해줌 - 믿을 수 있는 주택개보수 관련 사업자를 소개해주고, 사업자의 공사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함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외(20××), “……”, p.××**

**주요역할**

- HIAs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계층 파악: HIA는 지방정부와 함께 그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노약자층을 조사하여 HIA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계층을 파악해야 함, 이들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지만, 간혹 다른 계층이 포함되기도 함. 지역내 소비자 계층을 파악한 이후, HIA는 그들의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소비자 계층 뿐만 아니라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 함
- 노후불량주택 유지 보수와 관련한 상담지원: HIA는 노약자들의 주택을 방문하여 그들의 주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주고 이에 필요한 적합한 보수방안 및 법적 기준 등에 대해서 상담함
- 노후불량주택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한 상담지원: HIA는 노약자들에게 주택 보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함. 이들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조언해줌.
- 노후불량주택 보수에 필요한 기술지원: HIA는 노약자들의 주택을 방문하고 주택의 상태를 파악한 후, 주택보수가 요구되는 부분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상담해준다. 그리고 주택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믿을수 있는 주택 개보수 관련 사업자를 소개해주고 이들 사업자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한다.

**해석 및 시사점**

타인 저작물 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표현(단어 및 어휘, 어구, 문장, 문단 등)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이 사례처럼, 타인 저작물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생략, 말바꿔쓰기 등의 방법이나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 방법을 약간 달리 하였지만, 원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핵심 내용, 논리 구조, 표현 방식이 거의 유사 및 동일함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표절에 해당됨. 연구자는 자신의 보고서에 타인의 텍스트에 있는 일반적 지식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을 가져다 활용할 때 반드시 해당 부분에 대해 출처표시를 해야 함.

### 사례 3

**연구윤리 위반 유형**

**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

본 보고서에서 ○○○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깨끗한 한강 만들기 캠페인’(××~××쪽)을 소개하는 부분은 ○○○(20××)에서 작성한 “교과관련 주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의 일부 내용을 재정리한 것에 그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인용 표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참고문헌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사례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에 의해 수집, 작성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제시한 경우로 의심됨

**예시**



**표절 의심 부분: p.XX**

**(가) 깨끗한 한강 만들기 캠페인**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임을 인지하고 한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체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그림 Ⅲ-2]와 같다.

- 종락 -

**(나) 안전한 등·하갯길 만들기 프로젝트**

- 종락 -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바른생활 ‘지키면 안전해요’, ‘생명의 소중함’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지하철 사고의 대처방안, 일본의 대지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의 사례와 대처방안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4가지 주제와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안전한 등·하갯길 만들기 프로젝트 주제

구분	스토리텔링의 내용	견학 및 탐방
safe theme1: 집	-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 퀴즈로 풀어보는 화재 예방	소방역사박물관
safe theme2: 교통	- “앗! 차 조심!” - 지하철 화재 및 비상대처 요령 교육	도시철도공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safe theme3: 건물	- “학교에서 뛰지 않아요” - 가상 체험 “흔들흔들! 지진이 났어요!” 프로그램 진행 - 등갯길 친구를 위한 우측 통행 캠페인 실시 -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이용법’ 교육	보라매 안전체험관
safe theme4: 성교육	- “집에 가는 길, 이상한 아저씨가 말을 걸어요” - 성교육: 생식기 기능과 몸의 소중함, 성추행 예방과 대처 교육 - 유괴 및 미아 예방 교육: 아동 납치 예방 어린이 뮤지컬 관람	아하! 성 문화 센터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20××), “……”**

- 프로그램명: 깨끗한 한강 만들기! 생명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교과서 내용
  - 초등 6학년 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 초등 4학년 도덕: 환경과 환경보호 소중한 물
  - 초등 4학년 사회: 한강! 물에도 길이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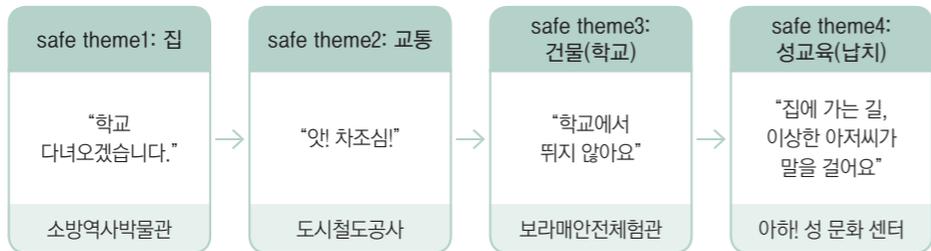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2학기 바른생활의 ‘지키면 안전해요’, ‘생명의 소중함’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지하철사고의 대처방안, 일본의 대지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의 사례와 대처방안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4가지 주제와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프로젝트 주제

구분	스토리텔링의 내용	견학 및 탐방
safe theme1: 집	-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 퀴즈로 풀어보는 화재 예방	소방역사박물관
safe theme2: 교통	- “앗! 차 조심!” - 지하철 화재 및 비상대처 요령 교육	도시철도공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safe theme3: 건물	- “학교에서 뛰지 않아요” - 가상 체험 “흔들흔들! 지진이 났어요!” 프로그램 진행 - 등굣길 친구를 위한 우측 통행 캠페인 실시 -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이용법’ 교육	보라매 안전체험관
safe theme4: 성교육	- “집에 가는 길, 이상한 아저씨가 말을 걸어요” - 성교육: 생식기 기능과 몸의 소중함, 성추행 예방과 대처 교육 - 유괴 및 미아 예방 교육: 아동 납치 예방 어린이 뮤지컬 관람	아해! 성 문화 센터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 프로그램명: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위기탈출 넘버원!
- 교과서 내용
  - 초등 2학년 바른생활: 지키면 안전해요. 생명의 소중함
  - 초등 2학년 사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올바른 이용법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내용
safe theme1: 집	- 퀴즈로 풀어보는 “화재예방 퀴즈 SHOW” - 소방역사박물관 탐방
safe theme2: 교통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방문 -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화재 및 비상대처요령’ 교육
safe theme3: 건물	- 가상 체험 “흔들흔들! 지진이 났어요!!” 프로그램 진행 - 등굣길 친구를 위한 “우측통행” 캠페인 실시 -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이용법’ 교육
safe theme4: 성교육	- 성교육: ‘생식기 기능과 몸의 소중함 및 성추행 예방과 대처’ 교육 - 유괴 및 미아예방 교육: ‘아동납치예방 어린이뮤지컬’ 관람

**해석 및 시사점**

연구자가 자신의 보고서에서 타인 또는 어떤 기관의 보고서나 자료를 활용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함. 이 사례처럼, 어떤 기관에서 작성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의 일부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연구자가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음. 왜냐하면 학술지나 단행본에 게재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아닌 어떤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일지라도 그 프로그램은 보호받을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임.

# 사례 4

<b>연구윤리 위반 유형</b>	표절 의심사례
<b>판단 근거</b>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출처 표기가 누락되어 있음.

### 예시

#### 표절 의심 부분: pp.XX X줄~XX XX줄

적극적 조치는 원래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반차별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의 하나로 반차별만으로는 인종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반차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의 조건을 같이 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적극적 조치가 시작하게 되었다. 적극적 조치는 이러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치료책으로 흑인과 여성에게, 이를테면 채용·승진·훈련 등에서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다.

- 종략 -

Holzerdhk와 Neumark(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소수집단의 자질(교육 정도)은 실시하지 않는 기업보다 낮았지만 그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낮지 않았다고 한다.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은 미실시 기업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적자본을 형성하여 더 많은 흑인과 여성을 이끌어 들이며 공식적 성과평가에 더 의존하고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여성 채용과 생산성 간에 어떠한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대규모 기업에서는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할수록 그 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 pp.xx-xx

적극적 조치는 원래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반차별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의 하나이다. 그러나 반차별만으로는 인종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반차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의 조건을 같이 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적극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이러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치료책으로 흑인과 여성에게 이를테면 채용·승진·훈련 등에서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인 것이다.

- 종략 -

#### ● 연구결과(Holzer and Neumark, 2000)

적극적 조치 실시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과 소수집단의 자질(교육정도)은 비실시 기업보다 낮았지만, 그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낮지 않았다.

또한 적극적 조치 실시기업은 미실시 기업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적자본을 찾고, 더 많은 흑인과 여성을 이끌어 들이며, 공식적 성과평가에 더 의존하고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여성의 채용과 생산성간에 어떠한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대규모 기업에서는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할수록 그 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석 및 시사점

연구자는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기존 연구에 대한 기술에서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직접 기술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내용을 옮겨 놓고 있음. 해당 연구 분야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이론이나 내용을 활용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옳음. 출처표시의 대상은 인쇄된 자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전자자료도 해당되는 것임.

## 사례 5

<b>연구윤리 위반 유형</b>	표절 의심사례
<b>판단 근거</b>	대상원문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보고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출처 표기가 누락되어 있음.
<b>예시</b>	



### 표절 의심 부분: 평가 대상 보고서 pp.xx-xx

#### 1. MARKAL(MARKet ALocation) 모형

##### ① MARKAL 모형

수요에 따른 에너지시스템 분석을 위한 일반화된 에너지시스템의 다주기 선형계획모델이다. 1976~1979년간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주도로 이용한다. 목표 지향적인 통합에너지 분석과 계획 수립과 회원국 간의 국제 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에너지시스템이 목적이다. 강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오염원별 규제 목표치를 설정하여 최소 비용으로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조합 설계가 가능하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어 이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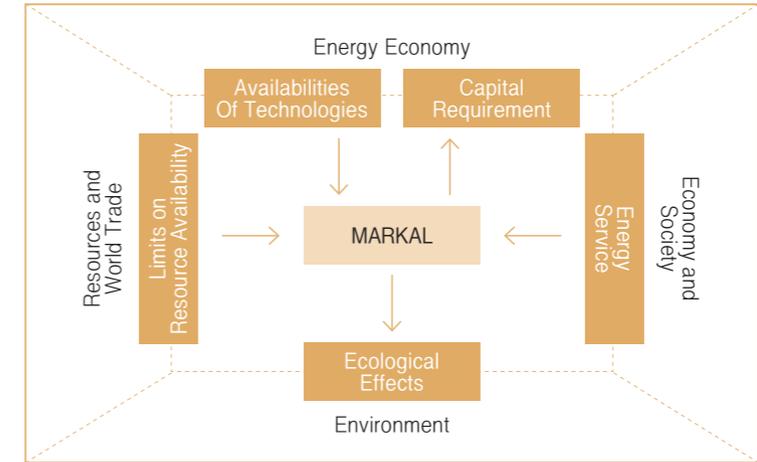
##### ② MARKAL 활용 가능 범위

신기술 대안의 탐색 및 평가와 투자 잠재력(비용 및 환경)의 평가와 일관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 목록 작성과 미래의 전망이다. 특정 에너지기술 또는 에너지원(원자력 등)의 단계적 이용 전환에 따른 경제, 안정도, 환경 효과를 평가한다. 수송수단 전환, 산업 구조의 변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새로운 에너지 사용 패턴의 도입과 같은 전환 결과로 발생하는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

##### ③ MARKAL 모형의 구조

에너지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동적 선형계획 모형이며 특정 지역 경제(일부)를 표현한다. MARKAL 모형의 주요 결과는 보통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에너지수요와 가격의 계획, 오염물질의 배출 제한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변화한다.

에너지와 재료의 전체 생명주기를 포함하는 수백 가지 공정들의 DB를 포함한다. 에너지와 재료의 물리적인 입력과 출력, 비용, 그리고 환경 영향에 의해 특성화되고, CO<sub>2</sub>, NO<sub>x</sub>, SO<sub>x</sub> 등의 배출을 고려한다.



#### ④ MARKAL 모형의 장단점

장점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는 에너지기술의 선택을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효과까지 추정했다. 에너지 생산, 수송,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에너지기술과 이와 관련된 비용 조건을 선택한다.

단점은 거시경제적인 Top-down 모델과는 달리 에너지 부분의 부분균형모델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거시경제와의 연과에는 한계이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 pp.xx-xx**

**2. MARKAL(MARKet ALocation) 모형**

본 모형은 수요에 따른 에너지시스템 분석을 위한 일반화된 에너지 시스템의 다주기 선형계획 모델로 1976~1979년간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주도로 목표지향적인 통합에너지 분석과 계획수립을 지원하기위해 회원국간의 국제 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상향식 기술 모형으로, 미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어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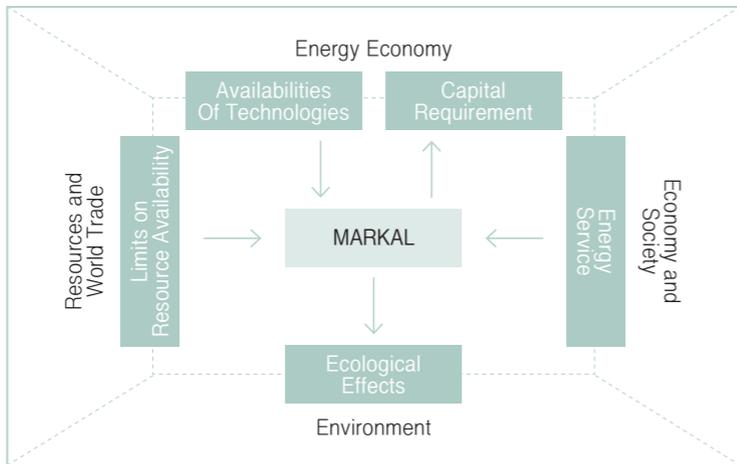
MARKAL모형은 강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오염원별 규제 목표치를 설정하여 최소비용으로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조합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별 또는 각종 환경정책대안의 효과 및 영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① MARKAL 모형의 활용가능 범위**

MARKAL모형은 신기술 대안의 탐색 및 평가와 투자 잠재력(비용 및 환경)의 평가와 일관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목록 작성과 미래의 전망, 그리고 특정 에너지기술 또는 에너지원(원자력 등)의 단계적 이용 전환에 따른 경제, 안정도, 환경효과를 평가하며 수송수단 전환, 산업구조의 변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새로운 에너지 사용패턴의 도입과 같은 전환결과로 발생하는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

**② MARKAL 모형의 구조**

MARKAL모형은 에너지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동적 선형계획모형이며 특정 지역경제 (일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경제는 공정들과 공정들 간의 물리적 또는 재화의 흐름에 의해 표현되는 시스템으로 모형화 된다(그림 참조). 이들 공정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표현한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수많은 대체공정(공정의 집합)들을 통해 생산될 수 있다. 모형은 에너지와 재료의 전체 생명주기를 포함하는 수백 가지 공정들의 DB를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성은 공정 활동과 흐름에 의해 특성화 된다.



공정과 개별 프로세스 및 전체 지역에 대한 제약조건의 DB는 모든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다. 제약조건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새로운 공정들의 최대보급율, 자원의 이용성, 에너지 사용과 배출에 관한 환경정책 목표 등에 의해 결정된다.

공정들은 에너지와 재료의 물리적인 입력과 출력, 비용, 그리고 환경 영향에 의해 특성화되고 CO2, NOx, SOx 등의 배출을 고려한다. 폐기물의 양 또는 토지사용과 같은 기타환경영향역시 포함될 수 있다. 모든 환경영향은 공정비용과 공정들간의 에너지 및 재료흐름의 비용에 포함된다.

MARKAL 모형의 주요 결과는 보통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평가된다. 에너지시스템에서 최적으로 결정되는 기술들의 조합은 시나리오에 따라 변한다. 즉, 에너지 수요와 가격의 계획, 오염물질의 배출제한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변한다. 어떤 기술들은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나리오들을 보고 기술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③ MARKAL 모형의 장단점**

MARKAL 모형의 장점으로서는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는 에너지기술의 선택을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효과까지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 생산, 수송,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에너지 기술과 이와 관련된 비용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MARKAL 모형은 미래의 에너지수요에 대해 신기술의 대응, 자본도입의 다이내믹, 에너지 효율의 장기적 개선의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최적화 모형인 반면, 거시경제적인 Top-down모델과는 달리 에너지 부분의 부분균형모델로서 이들 모형은 온실가스 감축과 거시경제와의 연관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석 및 시사점**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독창적인 개념, 문장, 단락, 그림, 표 등을 가져다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함. 특히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그림이나 표 등을 동일하게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춰 변형시켰다고 해도, 그 그림이나 표의 핵심 원리 및 아이디어가 타인의 것과 유사하다면 출처를 밝혀야 함. 즉, 자신의 저작물에 있는 표나 그림이 타인의 어떤 저작물의 표나 그림을 참조 또는 응용한 것일 경우, 그 출처를 정직하게 밝혀야 함. 아무리 모형이 해당 분야에서 익히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형의 골격을 설명하고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함. 본 연구의 목적과 논리적 흐름에 맞게 요약 내지 적절한 말바꿔쓰기를 한 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사례 6

## 연구윤리 위반 유형 판단 근거

**표절 의심사례**  
 의심부분은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를 '지닌다'로 바꾸었을 뿐 의심부분 대상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음에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음. 문장의 개수는 두 개이지만 여러 개의 절들로 구성된 복문으로 분량이 상당하고, 표현과 내용 전개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페이지를 명기하여 출처표기를 하고 인용부호나 편집을 통해 직접인용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 예시

### 표절 의심 부분: pp.xx~xx

#### 1. 경제 체제의 변화

첫째,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진행되어온 60년대 이후 개인의 인권이나 국민의 복지보다는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여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우선정책은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거시체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가족이라는 미시체계의 소외를 수반한 것이 사실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정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원의 정서적 유대와 결속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핵가족화이다. 핵가족이야말로 산업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족 형태라는 일반적 인식과 함께 가족의 이동성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핵가족은 노인부양의 과도한 책임, 자녀양육 및 교육기능의 취약성 등을 문제점으로 갖게 되었다.

셋째, 우리 사회는 고도화된 산업화로 인해 노동 시장이 확대되었고, 확대된 노동 시장은 여성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성의 증가된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과 사회가 전통적인 이분법적 성역할 개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인 관계를 강조하게 하였으나,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이 새로운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족경제력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2. 기술 및 의학의 발달

우선 기술 및 의학의 발달이 가족에 미친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는 유아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이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개별 가족의 능력을 넘어서는 노인 부양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기술 및 의학의 발달 중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사건이 피임약의 개발이다. 피임약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혼전 성관계가 증가하고, 자녀수와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이 가능해졌다.

셋째,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자동화된 가사노동 보조제품, 여가생활제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져옴으로써, 주부들의 여유 시간의 증가와 함께 가족의 안식처 기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갈등 및 대립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3. 가족 가치관의 변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주요 가치 즉, 가부장주의와 양성평등주의가 혼재되어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 내부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가치관의 차이와 함께 남녀 간의 가치관 차이가 표면화 되고 있다. 가족 가치관의 변화 중 첫 번째는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가는 다양한 가족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결혼적령기의 성인들이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직업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오를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면서 만혼이 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을 결정한 여성과 남성도 증가하고 있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 pp.xx→xx**

**1. 경제체제의 변화**

**① 국가의 경제발전 우선주의**

우리 사회는 1960년 이후 개인의 인권이나 국민의 복지보다는 산업화를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우선주의는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거시체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가족이라는 미시체계의 소외를 수반한 것이 사실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정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원의 정서적 유대와 결속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② 핵가족화와 가족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핵가족화이다. 이는 핵가족이야말로 산업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족 형태라는 일반적 인식과 함께 가족의 이동성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 중략 -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직계가족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를 지니는데, 대표적인 쟁점이 노인부양의 책임을 개별 핵가족이 맡지 않을 경우 벌어지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한편으로 조부모세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핵가족은 자녀 양육 및 교육 기능에 취약성을 갖게 된다.

**③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우리 사회는 고도화된 산업화로 인해 노동 시장이 확대되었고, 확대된 노동 시장은 여성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중략 -

여성의 증가된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경제력은 가족 내 권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보다 평등한 부부 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이분법적 성역할 개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인 가족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후략 -

**④ 가족경제력 향상으로 인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우리 사회의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의 경제력 또한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표3-5>와 <표3-6> 참조.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중략 -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이 정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기술 및 의학의 발달**

**① 의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이 가족에 미친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는 유아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이다.

- 중략 -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개별 가족의 능력을 넘어서는 노인 부양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② 피임약의 개발**

기술 및 의학의 발달 중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사건이 피임약의 개발이다. 피임약의 발달로 인해 임신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은 출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 피임약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혼전 성관계가 증가하고,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자동화된 가사노동 보조제품, TV, VCR, DVD 등의 여가생활제품, 그리고 컴퓨터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능하게 했다. 가사노동의 자동화로 인해 주부들의 여유 시간의 증가하게 되는 한편 가족의 안식처 기능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갈등 및 대립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가족 가치관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영향을 받은 가족 가치관은 다시 사회의 변화를 야기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주요 가치, 즉 가부장주의와 양성평등주의가 혼재되어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 내부에서는 부모자녀 간에 가치관의 차이와 함께 남녀 간의 가치관 차이가 표면화되고 있다.

**①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2002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혼자는 14만 5,300쌍이며,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3.0건으로 증가하였다.

- 중략 -

이혼율의 증가는 재혼율의 증가와 맞물린다. 2002년의 전체 결혼 수에 대한 재혼의 비율이 남자는 15.4%, 여자는 17.2%에 이르고 있다.

- 중략 -

이혼과 재혼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가는 다양한 가족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방해받지 않도록 호주제 및 친양자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② 결혼율의 감소 및 만혼현상**

결혼적령기의 성인들이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직업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오를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면서 만혼이 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을 결정한 여성과 남성도 증가하고 있다.

**해석 및 시사점**

타인 저작물에 있는 텍스트를 제시 방법을 약간 달리하여(1, 2, 3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을 거의 그대로 첫째, 둘째, 셋째로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음) 기술하고 있으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절에 해당됨.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내용을 핵심 용어, 표현 순서와 전개 방식이 동일함에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것을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경우와 같음. 이는 전형적인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표절에 해당됨.

# 사례 7

<b>연구윤리 위반 유형</b>	표절 의심사례
<b>판단 근거</b>	타인의 영어 저작물 내용 중 일부를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있음.

### 예시



#### 표절 의심 부분: pp.xxx xx줄~p.xxx쪽 x줄

전력기업(utilities)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턴키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위험 회피적 전략에서 사내에 개발 및 운영/유지(O&M) 전담팀을 보유하는 수직통합 전략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다. 전력기업이 채택하는 전략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째, '녹색'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은 기업 내 축적된 경험, 유럽 전역에 걸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성숙도가 낮은 시장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확대하는 기업들이다. 여기에는 스페인이나 덴마크같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 온 나라의 전력기업이 주로 포함된다.

둘째, 포트폴리와 확대에 보다 점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기업들이다. 여기에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기업들이 속하며, 주로 인접국 시장으로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함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들 기업은 수직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팀을 구축함과 동시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각국 국내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전통적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원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시장 확대를 위한 규모의 제약으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전력기업과 함께 IPP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수직 통합된 IPP는 전력기업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하기 전부터 풍력터빈 기술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형 건설 및 산업 기업과 연계되어 있던 스페인 기업에 의해 시작된 IPP 모델은 현재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화했다. 첫째, 수직 통합된 IPP이다. 이 모델은 프로젝트 개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운영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풍력 프로젝트 구매자 기업이다. 둘째 유형은 에너지 기업이라기보다는 금융투자자로, 풍력발전소의 개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통합 IPP는 전력기업과 경쟁하면서 그린필드 프로젝트 개발이나 기업 인수를 통해 국제적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동유럽으로 확장을 꾀하는 한편, 해상 풍력으로 확장을 꾀하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통합 IPP들이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력기업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IPP는 전력기업에 비해 자본조달 비용이 높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경쟁해야 한다.

개발기업(developers)의 전략은 개발/판매 전략과 개발/소유 전략으로 구분된다. 유럽의 성숙 시장과 도약 시장(scaling markets)에서 그린필드 투자의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개발기업은 순수 개발 사업에서 IPP로 이행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 전통적 방식인 개발/판매 기업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유럽은 성숙도가 다른 다양한 시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아직 성숙기에 들어서지 못한 시장에서 순수 개발기업(개발/판매 모델)이 유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과 비교하여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전력기업(utilities)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력기업의 비중은 2002년 17%에서 2007년 25%로 크게 증가했다. 성숙기 혹은 도약기에 진입하는 유럽 각국 시장이 증가하면서 전력기업이나 IPP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기업은 주로 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서 대체로 유럽 전역을 사업영역으로 한다. IPP의 역할도 경험을 축적한 수직 통합 기업, 기업 내 개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거나 턴키 프로젝트를 구매할 여력이 풍부한 대규모 투자자를 중심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사업 확장을 노리는 전력기업의 M&A 대상이 될 것이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전력기업의 비중이 20%에서 25%로 상승하는 동안 톱 IPP의 비중이 10%에서 9%로 하락한 것도 전력기업에 의한 IPP의 인수와 무관하지 않다. 독일 투자자의 비중은 2002년 50%에서 2007년 40%로 감소하는 등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당분간 최대 보유자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반면 스페인계 기타 IPP의 비중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IPP들이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경쟁압력에 의해 퇴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 pp.xxx~xxx

To maximise profitability, utilities have steadily migrated from risk-averse turnkey project acquisition to greater vertical integration, with in-house teams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s and maintenance (O&M). Strategies devised by these players for meeting their objectives have largely depended on their experience in the sector as well as on their desire to expand geographically.

Utilities adopting a ‘green’ strategy are among the few European wind players that combine in-house experience and sufficient balance sheet to ramp up capacity at the pan-European level, whilst risking project development in less mature markets to sustain growth in the portfolio. These utilities have generally originated from countries with more pro-active renewables policies, including Spain and Denmark.

Another set of utilities have taken a more gradual approach to adding wind into their generation portfolios. These players, from Portugal, Italy and Germany, have moved into neighbouring markets and looked to build wind alongside thermal plants; they have made major acquisitions to support growth while following green utility strategies of building up internal teams for more vertical integration.

A third set of utilities, mostly working with conventional energies, has remained more domestically focused. Whether due to lower resource conditions, or a lack of scale to pursue larger opportunities, these players tend to focus on complying with national targets.

#### IPPs SEEK POSITIONS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MARKET

Even before utilities began adopting wind energy, Europe’s vertically integrated IPPs started aggressively exploiting wind turbine technology to improve their positioning. Led primarily by Spanish firms that were connected to large construction and industrial companies, the IPP model has evolved in various forms to represent a significant group of players in the value chain.

There are two main types of independent power producer in Europe: integrated ones, which have capabilities across the project development value chain and exploit these for maximum control and returns on their project portfolio, and wind project buyers, which tend not to play a direct role in the development of wind plants in their portfolio, as these firms are often financial investors, rather than energy players. The number of these players that are active has continuously increased over the past three years, as utilities have sought acquisitions among this field of asset and pipeline-holding competitors, though those that are already a significant size may be positioned for long-term growth.

In terms of development, integrated IPPs are continuing to expand internationally, through greenfield project development and acquisitions, in order to compete with utilities. Players with strongholds in Spain, France or Germany consistently look for growth in Eastern Europe, while some are also taking the plunge offshore. More risk-averse IPPs are seeing the number of quality projects available for acquisition in mature markets continue to dwindle.

As wind power owners, IPPs are facing stiffer competition from utilities as several project portfolios have been acquired in markets such as Spain, Germany, France and the UK. IPPs generally have higher capital costs than utilities, and those that can create assets organically

through development on their own are generally better positioned to enlarge their portfolio.

As asset managers on the value chain, integrated wind IPPs and project purchasers are distinctly different, with integrated players increasingly focusing on O&M to maximise asset values. The boom in MW additions in the last three years means many turbines are coming out of their warranty periods, requiring IPPs to make key strategic decisions on how to manage their installations.

#### DEVELOPERS ADJUST STRATEGIES TO THE CHANGING ENVIRONMENT

European developers follow two distinct growth strategies: a develop-and-sell approach or a develop-and-own approach. With greenfield opportunities across consolidating and even scaling markets drying up, some pure play developers have transitioned into IPPs as a means of ensuring a steady revenue flow, often operating as pure plays in some markets and IPPs in others. However, a large number of traditional develop-and-sell players remain, and these are now focusing on capitalising on remaining opportunities in Europe’s markets exhibiting wide levels of maturity.

- 종략 -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most salient trend has been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utilities in the industry. Utilities’ share of the total wind power installed increased from 17 per cent in 2002 to 25 per cent in 2007. The biggest jump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06, when the region’s top wind utilities saw annual additions of well over 500 MW.

With consolidation in Europe’s mature and scaling markets, it is anticipated that utilities and IPPs will have a bigger role in the future. Utility growth will be largely driven by pan-regional players realising their near-term projects, which currently range from 1000 to 4000 MW.

IPPs will also continue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in wind, led by experienced vertically integrated players and larger investors able to develop internally or buy turnkey and leverage their strong financial capacity. At the same time, several of these firms may fall prey to expanding utilities, as seen in the past year, in which these firms’ share fell to 9 per cent.

While German investors will continue to be the largest wind power ownership block in the next few years, their participation will diminish over time, as Germany’s contribution to Europe’s total wind power market decreases. On the other hand, Spanish IPPs are expected to decline in the near term despite the Spanish market’s continued growth, as these smaller IPPs are either acquired by larger players or struggle to realise their modest pipelines amidst an increasingly competitive development environment.



#### 해석 및 시사점

타인이 쓴 외국어 저작물을 그대로 번역하여 활용하지 않고, 연구자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여 활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함. 종종 어떤 연구자들은 외국어 저작물을 번역해 활용하면서도 그 번역의 대상인 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속이는 것이므로 표절에 해당됨. 따라서 연구자가 외국어 문헌을 활용할 때(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든, 번역한 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하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② 재인용 출처를 누락한 경우의 의심사례

사례 8

연구윤리 위반 유형	표절(2차문헌 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	1차 문헌을 활용한 것으로 출처표시와 참고문헌에 밝혔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정리한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예시

**표절 의심 부분: p.xx(x줄~xx줄, xx줄~xx줄)**

Johnston(1994)은 규모의 경제(자원의 집중)와 연구의 생산성의 관계를 기존자연과학 분야의 논문들을 통해 분석하였고, Allison & Long(1990)은 연구자가 소속한 학과의 명성과 연구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해 일자리 변화(job changes)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생산성이 높은 연구자가 명성이 높은 학과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에 현재 소속된 학과의 명성이 높으면 시설이나 지적 자극, 동기 등으로 인하여 연구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senberg(1982)는 장비(instrumentation)의 발전이 과학적 사실의 관찰 및 측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과학진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장비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장비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다른데, 입자가속기나 원심분리기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만 영향을 주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컴퓨터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장비도 있다. 이러한 장비의 가격으로 인한 연구비용 상승은 연구자간 장비의 공유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1-1: ○○○ (20××), “……”, △△△△△, p.x(xx줄~xx줄), p.xx(x줄~x줄), p.xx(xx줄~xx줄)**

- p. x  
Johnston (1994)은 규모의 경제(자원의 집중)와 연구의 생산성의 관계를 기존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 p. xx  
Allison & Long(1990)은 연구자가 소속한 학과의 명성과 연구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해 일자리 변화(job changes)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연구생산성이 높은 연구자가 명성이 높은 학과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에 현재 소속된 학과의 명성이 높으면 시설이나 지적 자극, 동기 등으로 인하여 연구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 xx  
Rosenberg(1982: 234)는 연구 장비(instrumentation)의 발전이 과학적 사실의 관찰 및 측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과학진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미경, 망원경, X-선 분석기, 원심분리기, 입자가속기, 분광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러한 장비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장비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다른데, 입자가속기나 원심분리기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만 영향을 주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컴퓨터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장비도 있다. 이러한 장비의 가격으로 인한 연구비용은 상승은 연구자간 장비의 공유가 점점 중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1-2: ○○○ (19××), “.....”, △△△△△,  
p. xx ○○○ (20××), “.....”, △△△△△, p. xxx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a study commissioned by the Australian National Boar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examines in detail the effect of resource concentration on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basis for critical mass, economies of scale, critical time and risk strategy hypotheses.

To resolve this issue, we studied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179 job changes by chemists, biologists, physicists, and mathematician.

Scientists at prestigious university departments tend to have higher rates of publication and higher rates of citation to those publications than scientists at lower-ranked departments(Cole and Cole 1973; Hagstrom 1968).

A somewhat less popular explanation is that better departments are abl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productivity of their members(Crane 1965; Long 1978). This could happen in three major ways:

1. Facilities. Many studies have found high correlations, at the departmental or university level, between institutional prestige and such factors as laboratory facilities, computer hardware, library holdings, graduate student ability, and time available for research (Hagstrom 1971; Cartter 1966; Clark, Hartnett and Baird 1976).
2. Intellectual stimulation. Scientists depend on other scientists for suggestions and constructive criticism. Close contact with other outstanding scientists may provide ideas that stimulate a scientist's own productivity.
3. Motivation. Departments vary considerably in the allocation of rewards and punishments for productivity or lack of productivity (Reskin 1977). Prestigious departments may have more rigorous publication requirements for advances in rank and salary. Equally important may be the desire to maintain informal esteem among highly productive colleagues(Zuckerman 1967).



## 해석 및 시사점

연구자가 1차문헌을 직접 보고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1차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도 즉,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문헌에 대해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됨. 특히 이를 2차문헌 표절이라고 하는데,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를 리뷰할 때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즉, 2차문헌 표절은 타인이 1차문헌을 통해 자신의 연구 목표나 논지에 부합하게 분석 및 요약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마치 자신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하는 것임. 위 경우, 연구자는 영어원문을 1차로 활용한 타인의 2차문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마치 영어원문을 직접 활용한 것처럼 부적절한 출처표시를 하고 있음. 서로 다른 연구자가 아무리 동일한 문헌에 대해 리뷰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주체가 다르다면 사용하는 용어, 표현법, 글의 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차문헌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 다른 사람이 1차문헌을 보고 심혈을 기울여 분석 및 정리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그것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독자적인 리뷰 노력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옳지 않음.

## ③ 인용된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의 의심사례

## 사례 9

연구윤리 위반 유형	표절(양적/질적 주종관계) 의심사례 (교육을 목적으로 이전 사례를 제시함)
판단 근거	단락의 마지막에 출처표시는 하였으나, 차터마크 제도의 연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타인의 저작물(○○○, 2×××)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짐.

## 예시



## 표절 의심 부분: 평가 대상보고서 pp. XXX-XXX

## 1. 평가과정

차터마크의 평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행정서비스 현장을 운용하고 있는 개별 행정조직이 차터마크 평가기준(9개 제정원칙에 고객만족을 더한 10개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리스트 작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여 내각사무처의 현장 프로그램 운영실에 신청을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차터마크 평가팀에 의한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단계이다. 차터마크 평가팀은 지원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때때로 차터마크를 수상한 기관에서 일부 선정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증적자료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1드백해 주는 한편, 차터마크 평가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독립심사관패널에서 수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1999년 도의 독립심사관패널은 의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학계를 비롯하여 공무원 노조 (UNISON) 사무총장, 뉴캐슬국립병원원장을 포함한 우수공공조직의 장, 앤더슨컨설팅 연구부장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2XXX).

## 2. 평가기준 및 고려사항

차터마크의 수여와 관련한 평가기준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9개의 제정원칙에 “고객만족”을 포함한 10개 기준이며, 각 기준별로 세부평가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평가 시 주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사항으로는 첫째, 성과의 수준이 명료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성과수준이 무엇이며 당해 기관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었는가? 둘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주었는가? 셋째,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넷째,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가? 다섯째, 예산을 비롯한 관련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마지막으로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는가, 또 미래의 업무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 평가의 주 고려사항이 된다(○○○, 2XXX).

## 3. 수상내용

차터마크의 수상기관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기관에 수여가능하다. 차터마크는 한번 수상하면 3년간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3년이 되기 전에 재신청하여 다시 수상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상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수상시점과 비교하여 미달된다고 평가되는 경우 3년 기간 내라도 차터마크는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차터마크의 수상에 따른 보상조치는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 별도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국가는 차터마크 수상에 대하여 명예와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차터마크 수상식을 국가적 행사로 마련하는데, 참고로 1999년도의 경우 수상을 비롯하여 16명의 장관과 9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수상기관에는 크리스탈 트로피와 수상에 의하여 서명된 증명서가 주어져며, 차터마크를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상기관은 차터마크의 로고를 해당기관의 편지지를 비롯한 각종 문구류, 장비, 자동차 등에 부착할 수 있고, 차터마크를 부착한 자체 제작물을 상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2XXX).



###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 pp.XX-XX

차터마크의 평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행정서비스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별 행정조직이 차터마크 평가기준(9개 제정원칙에 고객만족을 더한 10개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리스트 작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여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현장프로그램운영실(Service First Unit)에 신청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차터마크 평가팀에 의한 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단계이다. 차터마크 평가팀은 지원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때때로 차터마크를 수상한 기관에서 일부 선정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증거자료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1드백해 주는 한편, 차터마크 평가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독립심사관패널에서 수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1999년 도의 독립심사관패널은 의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학계를 비롯하여 공무원 노조 (UNISON) 사무총장, 뉴캐슬국립병원원장을 포함한 우수공공조직의 장, 앤더슨컨설팅 연구부장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차터마크의 수여와 관련한 평가기준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9개의 제정원칙에 “고객만족”을 포함한 10개 기준이며, 각 기준별로 세부평가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평가 시 주요하게 고려되어 지는 사항으로는 첫째, 성과의 수준이 명료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성과수준이 무엇이며 당해 기관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었는가? 둘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주었는가? 셋째,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넷째,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가? 다섯째, 예산을 비롯한 관련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마지막으로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는가, 또 미래의 업무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 평가의 주 고려사항이 된다.

차터마크의 수상기관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기관에 수여가능하다. 차터마크는 한번 수상하면 3년간 마크를 사용하 FTN 있으며,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3년이 되기 전에 재신청하여 다시 수상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상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수상시점과 비교하여 미달된다고 평가되는 경우 3년 기간 내라도 차터마크는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차터마크의 수상에 따른 보상조치는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 별도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국가는 차터마크 수상에 대하여 명예와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차터마크 수상식을 국가적 행사로 마련하는데, 참고로 1999년도의 경우 수상을 비롯하여 16명의 장관과 9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수상기관에는 크리스탈 트로피와 수상에 의하여 서명된 증명서가 주어지며, 차터마크를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상기관은 차터마크의 로고를 해당기관의 편지지를 비롯한 각종 문구류, 장비, 자동차 등에 부착할 수 있고, 차터마크를 부착한 자체 제작물을 상품화(배지, 스카프, 넥타이 등의 기념품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해석 및 시사점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표시했지만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의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나 어구 및 문장을 너무 많이 가져온 경우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어떤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것이 추가 되고 인용한 타인의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함. 즉, 전체적으로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와 표현이 추가 되고, 타인의 것은 예증, 보충을 위해 활용하되 종적인 것이 되어야 함.

④ 출처를 부분적·한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의 의심사례

사례 10

연구윤리 위반 유형	표절(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의심사례
판단 근거	앞 문단에서 본문주로 출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다음 문단의 경우 계속해서 인용하여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표기를 하지 않음.

예시

표절 의심 부분: pp.xxx~xxx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적용은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외, 20××). 이 제도에 의해,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는 본인의 신청이 아닌 일정 조건(67)을 갖춘 이주노동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67) 일정 조건이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등 대한민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외국인에 대한 기타 의료서비스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에 의해 이주노동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비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을 시도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이주노동자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와 그 자녀이며 지원은 입원진료비와 당일 외래수술비로 되어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재정은 2005년~2007년까지 로또복권기금으로 100% 지원되다가 2008년부터는 국가지원 70%, 지자체 지원 30%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에 따라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으로 서울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전용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 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무료진료소를 마련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이주민 건강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공제회가 있는데, 이는 공적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장 네트워크로서 공제회에 가입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 pp.xx~xx

이 제도에 의해,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2004년 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 이후 2006년부터는 본인의 신청이 아닌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

일정 조건이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등 대한민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의미함.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에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비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임.

외국인근로자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임.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임.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을 시도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와 그 자녀이며 지원은 입원진료비와 당일 외래수술비로 되어 있음. 2005년~2007년까지는 로또복권기금으로 100% 지원되다 2008년부터는 국가지원 70%, 지자체 지원30%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아울러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으로 서울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전용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 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무료진료소를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이주민 건강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공제회가 있음. 이는 공적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장 네트워크로서 공제회에 가입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해석 및 시사점**

이 사례는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표절에 해당되는 경우임. 즉,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표시를 모두 명확하게 해야 함. 가져온 타인의 텍스트의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을 경우, 출처표시가 부적절하므로 표절에 해당됨.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출처 표시가 없는 부분은 연구자 자신의 아이디어나 표현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타인의 것을 가져다 쓰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구자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구자 자신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임.

⑤ 출처를 포괄적·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의 의심사례

**사례 11**

<b>연구윤리 위반 유형</b>	표절(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 의심사례
<b>판단 근거</b>	타인의 연구물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각주를 표시하여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양적/질적 주종관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예시**

**표절 의심 부분: pp.xxx(x줄)~p.xxx(x줄), p.xxx(x줄)~p.xxx(x줄)**

- p.xxx x줄~p.xxx x줄
- 2. 금융형 공공기관의 기원(각주xxx, ○○○-○○○ 전계서 xxx~xxx면)  
 개발은행을 포함한 정부소유의 특수목적 금융공공기관들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고, 특정기업, 산업 혹은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채널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직접 금융공공기관을 보유하고 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고 있다. ○○○○○(1999)을 바탕으로 금융공기업의 태동과 발전을 개관한다.  
 그에 따르면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공기업의 시초는 182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 후략 -
- p.xxx x줄~p.xxx x줄
- 3. 금융공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각주xxx, ○○○-○○○ 전계서 xxx 이하 참조.)  
 한 국가의 정부가 수행하는 금융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건전한 금융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고 제도적 구조(regulatory superstructure)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실패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보다 넓은 의미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산업 보호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통상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 후략 -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 xxx아래에서 x줄~p.xxx(xx줄), xx(아래에서 xx줄)~p.xxx(xx줄)**

● p.xxx 아래에서 x줄~p.xxx xx줄

많은 국가에 있어서 개발은행을 포함한 정부소유의 특수목적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고, 특정기업, 산업 혹은 부문에 자금을 공급해 주기 위한 채널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금융기관의 소유를 통해 금융 분야에 정부가 깊숙이 간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1999)을 바탕으로 금융공기업의 태동과 발전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

○○○○(1999)에 따르면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공기업의 시초는 182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 후략 -

● p.xxx 아래에서 xx줄~p.xxx xx줄

한 나라의 정부가 수행하는 금융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건전한 금융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고 제도적 구조(regulatory superstructure)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실패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보다 넓은 의미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산업 보호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금융공기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 후략 -

**해석 및 시사점**

인용된 부분에 대해 포괄적/개괄적 출처를 표시했지만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의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나 어구 및 문장을 너무 많이 가져온 경우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어떤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것이 추가 되고 인용한 타인의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함. 즉, 전체적으로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와 표현이 추가 되고, 타인의 것은 예증, 보충을 위해 활용하되 종적인 것이 되어야 함. 다만 2013년 연구윤리 평가 기준에 의하면, 정책 연구 기관의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행 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나 또는 그림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3) 부당한 저자 표시 의심사례

사례 12

<b>연구윤리 위반 유형</b>	부당한 저자 표시(교육을 목적으로 이전 사례를 제시함) 의심사례
<b>판단 근거</b>	용역 발주의 결과물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발주자의 공헌과 집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예시

**부당한 저자 표시 의심 부분: △△△△△△ “……” xxx(x줄)**

\*\*계열화의 쟁점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 조사자료와 이산회귀모형 등 계량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중에서 \*\*\* 분포와 평가방식에 따른 \*\*\*\* 변화분석은 외부전문가<sup>1)</sup>에게 의뢰하고, 해외 축산계열화 사례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sup>2)</sup>에게 원고를 위탁한다.

**해석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본 보고서의 일부 장, 절을 타인의 협조를 얻어 작성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함.

- 1)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및 감독을 해야 하며,
- 2)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본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저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함(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000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함).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만약 본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음.

1) 00대학교 \*\*\*\*학과 000 교수 2) 00대학교 \*\*\*\*경제연구소 000 선임연구원

### 4) 중복게재 의심사례

## 사례 13

<b>연구윤리 위반 유형</b>	중복게재(연구부적절행위) 의심사례
<b>판단 근거</b>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새로운 내용으로 오해케할 개연성이 높음.

### 예시

**중복게재 의심 부분:** pp. xx~xx 일부분단, pp.xx~x일부분단, pp.xx~xx, pp.xx~xx,

- p.xx~xx

월드비전 역시 대북 지원사업 초기(1994~1997)에는 긴급구호를 위주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1998년부터는 씨감자와 채소 생산, 과수묘목 및 채소 육종 지원사업 등 농업개발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월드비전의 주요 사업은 씨감자생산체계 수립 지원사업, 채소 생산 지원사업, 기타 농업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 중략 -

통일농수산사업단의 대북 지원사업은 북한 협동농장에 대한 종합적인 농업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합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 만큼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은 수도작 생산 증대 지원,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지원, 발작물 생산 증대 지원, 양돈장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농업기자재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학계의 농업기술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식량작물 시범재배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중략 -

북한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 농업생산 향상에 정책의 비중을 높게 부여한 바 있다. 이는 남북 간에 농업협력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동년 1월 통일부장관의 다보스포럼 연설과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2005년 역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포괄적 남북농업협력 추진 의사를 강도 높게 제시한 바 있다.

- p.xx 두 번째 문단 ~ p.xx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지원 의지와는 달리 북한의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정부 간 농업지원과 협력사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간의 대북 지원 및 농업협력사업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정부가 직접 추진한 바 있는 대북 농업개발협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남북한 정부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의 대북 농업개발협력의 폭은 확대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대북 협력 정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상황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 지원 정책에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대북 지원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한 대북 비료지원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실상 농업협력 차원의 지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한 기본 입장에서 지원이 추진된다면 대북 비료지원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료지원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접촉 과정에서 최소한 남북한 농업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의 농업 지원 및 농업개발협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이 남북한 당국 간 접촉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 전량을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을 중시한다면 대북 지원과 협력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북한과의 접촉면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 및 농업개발협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간지원단체와 지자체의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우선 긍정적 평가는 대북 지원 활동이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도울 수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부정적 평가도 있다.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황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무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개발협력 추진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북 농업지원에서 남북한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도 있다.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경우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많은 직원을 파견하여 활동을 하는 데 비해 우리 민간단체들은 단기간의 방북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그마저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원 물자의 분배 및 사용의 투명성 보장, 모니터링의 확대, 지원 현장에서의 활동 보장 등 국제사회와 동등한 수준의 현지 활동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농업개발협력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우리 내부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문제도 있다. 이는 지원 주체가신이 수행하려는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대북 농업개발협력 사업 혹은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된 농업개발협력사업 중 많은 수가 사업의 목표와 성격을 명백히 정립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한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로 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및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대북 개발지원사업이 상업적 협력사업과 혼동된 채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대북 지원을 추진한 바 있는 일부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물자의 지원과 함께 북한 농장의 공동설립 혹은 공동운영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농장의 공동운영은 북한 측이 받아들일지나와의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단체에 부과되는 부담도 매우 크며, 복잡한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투자비용 회수의 문제가 개입되면 이 사업은 순수한 개발협력사업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며 남북한 양측의 신뢰만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농업개발협력사업의 본령은 물자와 기술의 지원이다. 여기에 부가될 수 있는 활동은 지원물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물자의 올바른 사용과 관계된 기술협력 등이다.

- 종략 -

우선 일정 기간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계획수립과 충분한 자금조달이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지원단체는 많지 않으며, 자금 조달 역시 충분치 않아 사업추진에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농업지원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며 사업이 종료된 후 지원 대상 농장의 농업생산은 다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p.xx~p.xx

2005년 구축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체제이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한 남북 당국 간 협의는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합의된 사항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양측 기대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은 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교류를 중시한 반면, 북측은 물자지원을 더 중시했다. 남측은 중소규모 시범협력사업에서 효과를 보아가며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한 데 비해 북측은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협력(지원)사업을 선호했다. 남측은 실무 차원에서 정부 간 협의와 공식적 협력사업 추진을 선호하였으나 북측은 실무 차원부터 민간의 협의와 민간 협력사업 추진을 선호했다.

다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농업협력사업 중 '협동농장 협력사업'은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와 관계없이 추진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하다. 2005년부터 금강산 지역에서 추진된 남북공동영농지원사업은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추진된 농업개발협력사업이다.<sup>16</sup> 그 당시 실행된 북한 협동농장 대상의 남북공동영농지원사업은 내용상 2005년 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동농장 협력사업(시범영농단지 협력사업)'을 대체하거나 선도하는 협력사업이 될 수는 없었다. 그 협력사업이 남북농업협력 위원회에서 합의한 '협동농장 협력사업'으로 인정된다면 남북 당국 간 합의가 부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농업개발 협력사업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과 당국 간 합의된 '협동농장협력사업(시범영농단지 협력사업)'은 그 내용과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분류와 규모만 달랐을 뿐 사실상 차이가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북측의 오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측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전반에도 혼선을 야기시켰다.

가장 큰 혼선은 정부가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당초의 의도와 목적이 상실되는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업 시작 초기에는 민간단체의 단순한 농업지원사업에서 출발했으나

남북 합의 이후 당국 간에 합의된 농업협력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발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활동에 정부가 종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체성 측면의 문제가 있었으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 성과의 지속성 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지속성 측면의 문제'가 있었다.

● p.xx~p.xx

남북한 경제협력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문제들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에 '거래적 경비'라는 큰 부담이 지워졌다. 남북 경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견해이다. 남북 간 경험과정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 물류비용의 과다, 제도의 미비 등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해소될 수 있는 부수적 문제라는 견해가 있다(임원혁, 1998).<sup>17</sup> 다른 한편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를 협력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다 복합적이며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김영훈, 1999).

북한과의 상업적 농업협력사업(이하 경험사업)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계약재배와 투자협력사업 등 농업부문의 경험사업을 보면 투자비용 회수 방안이 비교적 가법게 다루어지고 있다. 경험사업은 궁극적으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자는 목적하에 시작되므로 언젠가는 투자비용이 회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농업부문의 경험사업에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농자재를 제공하고 농산물로 상환 받는 계약재배 협력 형태에서는 계약이행 여부와 서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치 책정이 문제가 될 뿐 투자비용 회수문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합영이나 합작형태의 투자협력사업에서 투자비용 회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그에 대한 계약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처리, 이익 배분, 과실 송금에 대한 규정은 빈약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해지면 경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북한과의 경험사업은 의사타진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지출이 과다할 수밖에 없다. 경험사업의 규모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이들 간접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회수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사업의 경우 간접 경비 부담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 종략 -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아산-고성온실농장' 간 경험사업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시작한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고성온실농장 간 경험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업의 상업적인 경영 능력이 잘 결합되어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계약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농업협력사업 자체가 소규모였기 때문에 사업이 복잡하지 않고 양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도 적었다.

두 번째 조건은 협력사업의 결과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가 확실했다는 점이다. 농업협력사업이 초기에 잘 기획되고 순조롭게 시작되었다고 해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 경험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아산의 농업협력사업은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된 농산물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금강산 관광단지 내 온정각 납품) 성공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중복계재 의심 부분 대상 원문:** ○○○외 2인(20××), “……”, △△△△△, pp.xx~xx, p.xx, pp.xx~xx, pp.xx~xx, pp.xx~xx, pp.xx~xx, pp.xx~xx

- p.xx~xx
- 월드비전
  - 대북지원사업 초기(1994~1997)에는 긴급구호를 위주로 한 인도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1998년부터는 씨감자·채소 생산, 과수묘목 및 채소 육종지원사업 등 농업개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주요 사업은 씨감자 생산체계 수립 지원사업, 채소 생산 지원사업, 타 농업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씨감자 생산체계 수립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북한 5개 지역에 씨감자 32생산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대흥단군을 중심으로 씨감자증식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종략 -
- 통일농수산사업단
  - 통일농수산사업단의 대북 지원사업은 북한 협동농장에 대한 농업개발 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국내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중 가장 규모가 큼.
  - 주요 사업은 수도작 생산 증대 지원,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지원, 발작물생산 증대 지원, 양돈장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농업기자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식량작물 시범재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p.xx
 

북측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 농업생산 향상에 정책의 비중을 높게 부여하여 남북 간 농업협력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함.

  - 남측도 2005년 1월 통일부장관의 다보스포럼 연설과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역점추진과제의 하나로 포괄적 남북농업협력 추진 의사를 강하게 제시함.
- p.xx~xx
-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농업지원 의지와는 달리 북한의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정부 간 농업지원·협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간의 대북 지원 및 농업협력사업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음.
  -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대북 농업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남북한 정부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의 폭은 확대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편중되어 있음.
  - 북한의 현재 상황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 지원 정책에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지만, 정부의 모든 대북 지원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농업협력차원의 지원에 해당되는 것임.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대북 비료지원이 추진된다면 비료지원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음.
- 즉, 비료지원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접촉과정에서 최소한 남북한 농업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의 농업지원 및 농업협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것임.
- 정부의 직접 지원이 남북한 당국 간의 접촉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 전량을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음.
  -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을 중시한다면 대북 지원과 협력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북한과의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 및 협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임.
- p.xx~xx
- 민간지원단체 대북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
  - 긍정적 평가 :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활동은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도울 수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부정적 평가 : 북한의 기아상황에 대한 심각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산발적이며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농업협력 추진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함.
- 한편 민간의 대북 농업지원에서 남북한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음.
  -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경우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많은 직원을 파견해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남한의 민간단체들은 단기간의 방북에 그치고 있음.
  - 지원물자의 분배 투명성, 모니터링의 확대, 지원 현장에서의 활동 보장등 국제 NGO와 동등한 수준의 현지 활동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임.
- 다른 한편 우리 내부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문제도 있음.
  - 지원 주체가 자신이 수행하려는 농업지원사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
  - 이는 대북 협력사업 혹은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민간지원단체의 농업지원사업 중 많은 수가 사업의 목표와 성격을 명백히 정립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음.
- 첫째, 지원사업의 목표 및 성격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업적 협력사업과 혼동된 채 추진되는 경우임.
  - 대북 지원을 추진하는 일부 민간 지원단체의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물자의 지원과 함께 북한 농장의 공동설립 혹은 공동운영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농장의 공동운영은 북한 측이 받아들일수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단체에게 부과되는 부담도 매우 크며 이는 복잡한 문제를 파생할 수 있음.

- 여기에 덧붙여 투자비용 회수의 문제가 개입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원사업의 범주에 들 수가 없게 되며 남북한 양측의 신뢰만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지원사업의 본령은 물자와 기술의 지원임. 여기에 부가될 수 있는 활동은 지원물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물자의 올바른 사용과 관계된 기술협력 등임.

- 종략 -

농업지원 사업의 목적이 농업개발에 있다면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계획수립과 충분한 자금조달임.
-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농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지원단체는 많지 않으며, 자금 조달 역시 충분치 않아 사업추진에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 경우 농업지원 사업은 1회성으로 그치게 되며 지원 대상 농장의 농업생산은 다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p.xx~xx

- 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합의된 사항도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그 이유는 양측의 기대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남측은 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인적교류를 중시한 반면, 북측은 물자지원을 더 중시함.
  - 남측은 중소규모 시범협력사업에서 효과를 보아가며 대규모 협력사업을 선호하는 반면, 북측은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협력(지원)사업을 선호함.
  - 남측은 실무차원에서 정부간 협의와 공식적 협력사업 추진을 선호하는 반면, 북측은 실무차원부터 민간의 협의와 민간 협력사업 추진을 선호함.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농업협력사업 중 '협동농장 협력사업'이 당초 합의 내용과 달리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협동농장 대상의 농업협력사업은 2005년 8월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동농장 협력사업(시범영농단지 협력사업)'을 대체하거나 선도하는 협력사업과는 별개임.
  - 이 협력사업이 협동농장 협력사업으로 인정된다면 남북 당국 간 합의가 논리적으로 부정되는 것임.
- 원칙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과 당국 간에 합의된 '협동농장 협력사업(시범영농단지 협력사업)'은 그 내용과 목적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이는 북측의 오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남측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전반에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 북측의 예상되는 오해: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한 협력사업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하므로 부담스럽다고 인식

- 남측의 예상되는 혼란: 민간단체가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오해를 야기함.
- 정부 차원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는 정체성의 문제도 있음.
  -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에서 출발해 현재는 당국 간에 합의된 협력사업 수행으로 전환(통일부)되고 있어 정체성이 유동적인 상태임.
  - 민간단체의 활동에 정부기관이 종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으며, 협력사업 성과의 지속성 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지속성의 문제'가 있음.

● p.xx~xx

남북한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

- 남북 간 경험과정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 물류비용의 과다, 제도의 미비 등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해소될 수 있는 부수적 문제라는 견해가 있음(임원혁, 1998).
- 한편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를 협력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경제협력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다 복합적이며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음(김영훈, 1999)
- 여기서는 협력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간 시도된 적이 있는 상업적 농업협력사업(이하 경험사업)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우선 지적함.

-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불분명함.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과다함.

첫째, 기존의 계약재배와 투자협력사업 등 농업부문의 경험사업을 보면 투자비용 회수 방안이 비교적 가깝게 다루어지고 있음.

- 경험사업은 궁극적으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자는 목적 하에 시작되므로 언젠가는 투자비용이 회수되어야 함. 그러나 그간의 농업부문의 경험사업에서는 투자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이 불분명했음.

- 농자재를 제공하고 농산물로 상환 받는 계약재배 협력 형태에서는 계약 이행 여부와 서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치 책정이 문제가 될 뿐 투자비용 회수 문제는 그리 비중이 크지 않음.

- 그러나 합영이나 합작형태의 투자협력사업에서는 투자비용 회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계약내용도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처리, 이익 배분, 과실송금에 대한 규정이 빈약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

-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경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불가능해짐.

- 둘째, 북한과의 경험사업은 의사타진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의 지출이 과다한 상태임.

- 경험사업의 규모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이들 간접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그러나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회수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사업에서의 간접경비 부담은 과소평가될 수 없음.

- 종략 -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아산-고성온실농장' 간 경험사업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시작한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고성온실농장 간 경험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업의 상업적인 경영능력이 잘 결합되어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

- 둘째, 농업협력사업이 초기에 잘 기획되고 순조롭게 시작되었다고 해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속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짐. 그러나 현대아산의 농업협력사업은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된 농산물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온정각 납품)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해석 및 시사점

중복게재는 이미 발표 또는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독자들에게 마치 이전에 전혀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 자료, 문장,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하여 오해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됨. 그러므로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처럼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함. 과거 출간물이 용역보고서로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저작물과 큰 차이가 없음. 출처를 표시했음에도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활용한 이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뭔가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기대하는 독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임. 연구자의 연구라는 것이 누적성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간다고 생각하면 자기표절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연구에서 누적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전과 비교하여 학술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추가하지 못하고 단순히 종합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사례 14

연구윤리 위반 유형	중복게재(연구부적절행위) 의심사례
판단 근거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새로운 내용으로 오해케할 개연성이 높음.

예시

중복게재 의심 부분: pp.xxx~xxx, pp.xxx~xxx

● p.xxx~xxx

나. 직업교육체제

1) 스웨덴의 새로운 고교단계 직업교육체제

스웨덴의 보수연합 정권은 경제계의 우수한 인력 요구와 스웨덴 고교 학생들 중 고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 3년간에 걸쳐 새로운 고교단계 직업교육체제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고교단계 직업교육체제는 학생들에 기본적인 실업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생활의 경험을 증대시키며 현장지도자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미래의 직업에 필요한 깊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략 -

기업과 기관들이 견습생을 받아들인 세 가지 중요한 이유로 신규채용의 필요성,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그리고 일정 노동 부문의 인력 증대 필요성과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능력 요구에 대한 부응을 손꼽았다. 견습생 수용 비용, 노동시장 관계 개선 및 현장지도자 교육 등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견습생 수용 결정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대신 기업이나 기관들은 학교의 직업과목 교사와 현장지도자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학생들의 현장 직업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p.xxx~xxx

3. 성인 대상 직업교육훈련

1) 콤복스의 개혁

1990년 말에는 정규 교육 제도상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개편뿐만 아니라 스웨덴 정부는 쿤스캅스리프뎃(Kunskapslyftet,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략 '지식 끌어올리기')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경제지원을 통해서 1997년과 2002년간에 전국적으로 콤복스 및 기타 민간교육

기관에 약 10만 개의 새로운 성인 교육기회를 마련하였다. 이프로젝트는 OECD의 생애교육정책을 스웨덴의 현실에 바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성인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도와 지역에 위치한 사업주의 다양한 인력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는 새로운 성인교육의 형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략 -

다만 폴크하이스쿨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일부 성인 그룹은 예전의 교육에의 자유 및 자발적(free and voluntary) 참가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이유로 거의 강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가 빈번해 그 결과 학습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또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경우 교육 경험이 다양하고 언어적 배경에도 차이가 있어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폴크하이스쿨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학구열이 낮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인 그룹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중복게재 의심 부분 대상 원문: ○○○외(20××), “……”, pp. xxx~xxx, pp. xxx~xxx

● pp. xxx-xxx

나) 스웨덴의 새로운 고교단계 직업교육 체제

스웨덴의 보수연합 정권은 경제계의 우수한 인력 요구와 스웨덴 고교 학생들 중 고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 3년간에 걸쳐 새로운 고교단계 직업교육체제 실험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고교단계 직업교육체제는 학생들에 기본적인 실업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생활의 경험을 증대하고 현장지도자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미래의 직업에 필요한 깊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3)

- 중략 -

기업과 기관들이 견습생을 받아들인 3가지 중요한 이유로 신규채용의 필요성,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그리고 일정 노동부문의 인력 증대 필요성과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능력 요구에 대한 부응을 손꼽았다. 견습생 수용비용, 노동시장 관계 개선 및 현장지도자 교육 등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견습생 수용 결정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대신 기업이나 기관들은 학교의 직업과목교사와 현장지도자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학생들의 현장 직업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pp. xxx-xxx.

2) 성인 대상 직업교육훈련

가) 콤플렉스의 개혁

1990년 말에는 정규교육제도 상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에 대한 개편 뿐 만 아니라 스웨덴 정부는

쿤스캡스리프트(Kunskapslyftet,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략 “지식 끌어올리기”)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경제 지원을 통해서 1997년과 2002년간에 전국적으로 콤플렉스 및 기타 민간교육기관에 약 10만개의 새로운 성인 교육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OECD의 생애교육 정책을 스웨덴의 현실에 바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는 현재에도 지속되기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성인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도와 지역에 위치한 사업주의 다양한 인력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는 새로운 성인교육의 형태 개발을 목표를 두고 있다.

- 중략 -

다만 폴크하이스쿨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일부 성인그룹은 예전의 교육에 자유 및 자발적(free and voluntary) 참가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이유로 거의 강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가 빈번해 그 결과 학습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경우 교육 경험이 다양하고 언어 배경도 차이가 있어 교육 진행이 쉽지 않다. 폴크하이스쿨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학구열이 낮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인 그룹을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해석 및 시사점

이 사례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 속에 이미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씀으로써 마치 해당 내용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독자를 속인다는데 문제가 있음. 2013년 연구윤리 평가 기준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 보고서나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심화 및 확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를 소개한 부분이나 연구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보고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가져다 쓰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함.

### 5) 기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의심사례

## 사례 15

연구윤리 위반 유형	기타(URL 입력 미비)
판단 근거	인터넷의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 예시

####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위반 의심 부분: △△△△△△ “.....”

[그림 5-7] 영국 HIAs의 활동개념 및 간편 집수리 서비스 제공 모습



####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위반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New home improvement service for vulnerable people

Riverside Published by Riverside for Riverside in Housing and also in Communities, Health  
Wednesday 18th January 2012 - 2:44pm



Vulnerable people in South Ribble and West Lancashire can benefit from a new service aimed at helping them to stay safe in their homes.

#### 해석 및 시사점

이 사례는 타인 혹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자료(사진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표절 및 저작권침해의 의혹을 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인터넷 상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있는 그림, 사진, 이미지, 텍스트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바, 접속한 URL 주소와 접속 일자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

## 사례 16

## 연구윤리 위반 유형

기타(URL 입력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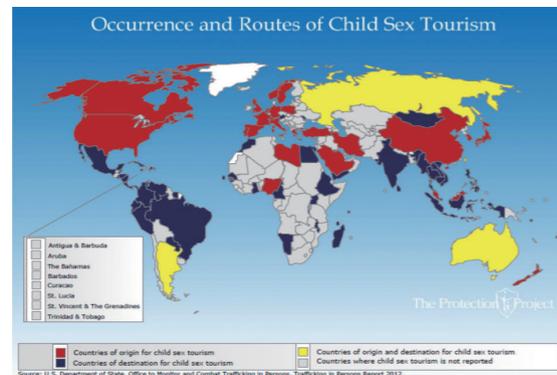
## 판단 근거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출처표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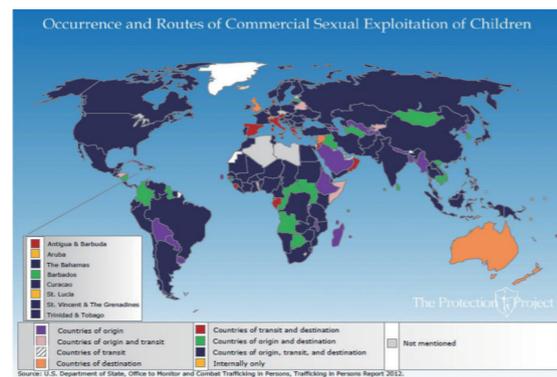
## 예시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위반 의심 부분: ▲▲▲▲▲▲ “.....”

[그림 1] 아동 성매매 관광 발생 국가



[그림 3] 상업적 성착취를 위한 인신 매매 발생 국가



 해석 및 시사점

이 사례는 인터넷 상의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또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출처로는 인쇄된 저작물의 출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상의 자료임. 그러므로 개인 혹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면, 그 홈페이지의 주소(URL)와 접속 일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 IV. Q&A



## IV. Q&A

- ☞ 의도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쓴 경우도 표절인가?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항상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 ☞ 중복게재, 이중게재, 자기표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 ☞ 중복게재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기준은?
- ☞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 ☞ 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시효는?
-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재구성하기 어려운 메인프레임을 출처표시를 하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 ☞ 정책연구를 위하여 해외자료의 번역 요약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양적주중관계나 2차문헌 표절로 지적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 ☞ 2차 문헌을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2차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시해야 하는가?
-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술지 및 정책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중언어로 발행된 연구물은 중복게재 위반인가?
- ☞ “이 장 · 절은 ○○○의 XXX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되었다”라는 출처표기는 잘못된 출처 표시인가?
- ☞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단락에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 ☞ 출처표시에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로 볼 수 있는가?



### 의도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쓴 경우도 표절인가?

- 표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됨. 기본 원칙은 자신의 저작물을 산출함에 있어 의존했던(인용된) 모든 저작물의 원저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서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는 것임.
- 물론 의도하지 않은 표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타인의 그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 의도적이지 않은 복사 또는 빌려오는 것도 표절(우연적인 표절, accidental plagiarism)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글을 자신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임.
-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일 때 표절이 발생함. 따라서 표절은 처음부터 타인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자신의 것으로 된 경우든 모두 해당됨.
  - 표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활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 발생하므로 타인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독자에게 그 출처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표절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항상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common knowledge)은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님.
  - 일반적 지식이란 간단히 말해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의 사람들(그 논문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나 아는 일반적 지식(상식)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써도 표절이 아님. 이를테면, 만유인력의 이론을 언급할 때 매번 해당되는 뉴턴의 논문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됨. 학술논문에서는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는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됨.
  - 융합 및 협동 연구의 경우, 그 결과를 다른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주 독자층의 일반적 지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분야 학술지에서는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대해 다른 분야의 논문 심사자들은 출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함.
- 타인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의를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에 해당됨.
  - 예를 들어 어떤 분석 모형이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이미 분석 및 기술해 놓은 것을 거의 그대로 또는 발췌하여 가져다 쓰는 경우 표절에 해당됨.
  -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하거나 요약한 경우라도 타인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면 반드시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함.

## 📖 중복게재, 이중게재, 자기표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가져다 후속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보통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 또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이라고 말함.
- 국내·외에서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합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물 출판시 저작권이 해당 학술지에 이양된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함.
- 자기표절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대학이나 학회 등에서는 사용 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표절, 중복게재, 이중게재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임.
  - 중복게재,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자기표절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혼용하거나 구분하여 쓰기도 하지만,
  - 그럼에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미 한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두 번째로 게재하는 것이 이중게재라면, 이전 저작물의 일부분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것은 중복게재라고 할 수 있음.



## 중복게재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기준은?

-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학술지에 이미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함.
  
-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identical)” 것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교되는 두 연구 결과물이 말 그대로 (거의) 똑같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보고서나 논문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이 같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의 일부가 조금 바뀌었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동일하다는” 의미의 예임.
  -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이후의 연구 결과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으로, 핵심적 논지가 변화되지 않고 결론도 다르지 않아 비교되는 두 저작물의 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임.
  
- 그러나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을 위해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비학술단체의 저널(발간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의 경우에도 뒤에 발표된 저작물에서 이전에 발표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 편집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중복게재가 아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동일 내지 거의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다년도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이전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 부분 가져다 쓸 때 출처 표시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다년도 과제임이 해당 출간물 내에 명시되어야 함.

- 비슷한 주제의 연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연구 결과의 발표 선후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상호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이때 출처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복게재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연구자 1인이 본의 아니게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후행 연구기관의 연구 관련 책임자에게 선행 연구의 개시를 알리고 계속 진행 여부를 타진해야 하며,
  - 만일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허락이 있었다면 일단 양쪽 연구의 서문이나 기타 적절한 지면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이후 연구 결과가 공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쇄나 재판의 경우에 먼저 발행된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 인용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
  -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절한 범위 내
- 타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됨.
- 연구자는 올바른 인용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용의 방법을 숙지해야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copying), 일부 단어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credit)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 부호(" ")로 표시해야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색깔이 담긴 언어로 표현되도록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함.
  -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의견, 비판점이나 역사적 사실은 직접 인용 하든 말바꿔쓰기를 하든 출처를 밝혀야 함.
  -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함.
  - 웹 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는 출처를 밝혀야 함.

##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시효는?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소급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2007년 2월에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고, 2011년 6월 2일 개정안에서는 시효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중요한 점은 시효 문제의 규정 여부라기보다는 얼마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연구수행의 기준에 맞춰 책임 있고 정직하게 연구를 수행하는가에 있음.
- 특히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천해 가도록 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연구진실성 검증 위원회가 가동될 때 판단 기준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고 해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을 받은 자가 그 연구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와 유사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의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당시의 그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학계나 연구기관의 합리적 관행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임.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재구성하기 어려운 메인프레임을 출처표시를 하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 어떤 연구자의 저작물 속에 있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나 구조를 그대로 혹은 재구성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타인이 구안해 낸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나 연구 방법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처럼 전적으로 타인의 것이기 때문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자료의 번역 요약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양적주종관계나 2차문헌 표절로 지적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 아무리 정책연구라고 해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는 인용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함. 해외의 자료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종 관련 내용을 직접 번역한 후, 이를 요약 내지 말바꿔 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출처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됨. 해외 자료의 번역이 2차문헌 표절로 판단되는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원문을 보고 번역 내지 번역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고, 1차로 소개한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마치 원문을 직접 보고 활용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발생함. 그러므로 해외 자료 번역의 경우 2차문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인용 표시를 정확하게 하거나 해당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연구자의 글쓰기 방식으로 표현해야 함.

 2차 문헌을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2차 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시해야 하는가?

- 연구자는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문을 찾아 1차 인용한 내용이나 출처가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인용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함.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고, 직접 원문을 찾아 확인하여 자신도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2차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옳음. 만일 연구자가 2차문헌만 보고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2차문헌에 대해 출처표시를 해야 함. 그러나 2차문헌만 보고도 2차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시하는 경우는 독자나 후속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이때에도 원문을 찾아 1차 인용한 맥락이 적절하고 페이지도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이 있음을 알고 그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술지 및 정책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중언어로 발행된 연구물은 중복게재 위반인가?

- 어떤 학술지나 정책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다른 독자층에게 널리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어떤 연구 성과나 자료(data set)가 공개되었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함. 그래야 그 논문이나 저서를 읽는 독자들이 마치 처음으로 발표된 것처럼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임.

 “이 장·절은 ○○○의 ×××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되었다”라는 출처표기는 잘못된 출처표시인가?

-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부적절한 출처표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즉, 타인의 저작물의 어떤 장·절의 내용을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말바꿔쓰거나 요약한 경우 “이는 ○○○의 ×××의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했다” 라는 출처표시가 적절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직접 가져왔으면서도 참조 혹은 재구성했다고 말하는 것을 올바른 출처표시가 아님. 왜냐하면,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쓸 때, 직접 인용하면서도 간접 인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원저자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임.
- 한편,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또는 그림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한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음.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단락에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은 인용부호(" ") 또는 인용 단락(인용되는 내용을 줄을 바꾼 후 본문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이 있으면 직접인용이고, \_\_\_에 의하면(따르면)으로 시작하면 간접인용에 해당됨. 직접인용은 원저자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간접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 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사람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함. 만일 한 단락에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동시에 해야 할 경우, 간접인용을 하는 중에 직접인용된 부분을 인용부호(" ")로 표시하면 됨.



출처표시에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로 볼 수 있는가?

-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됨. 또한 저자표시를 누락하였을 때 만일 저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저자로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는 명백한 저자표시로 판단됨. 그러므로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자로서의 역할 및 순서에 대해 민주적으로 정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음. 또한 저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함.

## V.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 V.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정 2014. 4. 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창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정도의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 평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평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인력 풀을 확보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③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한다.

**제6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란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 제2장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제7조(위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1.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2.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3.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행위

**제8조(변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

1.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자료들의 상이함을 수정하는 경우
2.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3.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제9조(표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1.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3.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4.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5.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6.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선행 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또는 그림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

**제10조(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단,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11조(중복게재)** ①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1.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3.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3. 출판되지 않은 연구의 초고, 이슈 페이지,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4. 연차보고서나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심화 및 확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를 소개한

부분이나 연구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5.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 ③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3장 연구보고서의 출처 표시 등

**제12조(출처 표시와 인용)** ① 연구보고서 작성 시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처 표시는 원칙적으로 문장 단위로 한다.
2. 출처 표시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출처 표시 방식은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달리할 수 있다.
4.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킨다.

②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3. 말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를 표시한다.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한다.

**제13조(출처 표시의 대상)** ① 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시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등
2. 전자 자료: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경제적 지표 등
4. 이미지: 차트, 그래프, 표, 설계 도면, 사진 등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6.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비공개 내부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2.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3.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 표시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4장 연구윤리 평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제15조(평가 절차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평가 절차
  2.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
  3. 평가 결과의 활용
  4. 그 밖에 연구윤리 평가 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에는 평가 대상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연구기관에게 소명 기회 부여, 피조사자의 권리 및 비밀 보호 등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에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의 심각성, 위반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활용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평가 결과의 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한다.

-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연구기관이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7조(설치근거)** 이사장은 제19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총괄위원회 위원, 연구회 평가담당 부서의 실장, 관련 주무부처 4급 이상 담당공무원(이상 당연직),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부재 시 기획평가위원회 기획총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검토
2.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 다만,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변경 시 위원회의 추천없이 이사장이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선정한다.
3. 평가대상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연구윤리 평가위원 3배수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 다만, 평가단 구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 변경 시 이사장이 위원회의 추천없이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4.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개정안 검토
5. 이사회에 보고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평가결과안 확정
6. 연구윤리 교육교재 검토
7. 연구회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제보에 의한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위원회에 부여한 업무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임기와 동일하고, 그 외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간사는 연구윤리 평가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준비하고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직무상 필요한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연구를 수행한 내·외부 연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보칙)**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선정, 연구윤리 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사장이 매년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

#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 |연구윤리 교육교재 집필진|

박 완 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F 팀장)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흥 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 인 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정 재 식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성 도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장)  
김 이 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제도개선실장)

발행인 : 안세영

발행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 쇄 : 2014년 5월

발 행 : 2014년 5월

주 소 : (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201호

문 의 : 평가·제도개선실

전 화 : 02-571-2621

팩 스 : 02-579-9355

홈페이지 : [www.nracs.re.kr](http://www.nracs.re.kr)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허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201호

Tel | 02.571.2621 Fax | 02.579.9355 [www.nracs.re.kr](http://www.nracs.re.kr)